

제309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임실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 합니다.

2021. 6. 4.

임실군의회 의장



1. 제정이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나. 정의(안 제2조)
- 다.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안 제3조)
- 라. 교육의 위탁(안 제4조)
- 마. 교육계획의 수립·실시·결과보고·이수자 관리·미이수자조치(안 제5조~제9조)

3. 참고자료

가. 관련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 등

- 1) 부패영향평가/규제심사: 원안동의/원안동의
- 2)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1. 5. 10. ~ 2021. 5. 31.) 결과: 특이사항 없음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미첨부 사유서 붙임)
- 3) 관련법령 발췌문: 붙임

임실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자”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영업장을 두고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및 제도 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 일시 및 장소
3. 교육 내용 및 방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실시) ① 교육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대면 온라인교육 또는 사이버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⑤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교육결과 보고 등) 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군수는 교육을 이수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지체 없이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대상 업소 및 해당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관리해야 한다.

제9조(교육 미이수자 조치) 군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 문화체육과장 강영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음악산업법)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717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11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2020. 2. 18.>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2020. 2. 1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29호, 2020. 12. 31, 일부개정]

제5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4.>

②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실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